

2. 명칭 : 차수형 조립식 흠막이 패널공법(S.W.A.P)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흠막이공

<기술의 요지>

흠막이 패널(열연강판) 양단에 암부와 수부가 있어 이웃하는 패널과 연속적으로 연결 가능하고, 패널이 갖는 너트형 구조에 고장력 볼트로 버팀 레일이 거치 및 해체될 수 있으며, 상기 레일에 버팀 보 양단을 통해 설치되어 설계 깊이를 핀(환봉)을 통해 조절 및 고정할 수 있는 공법이다. 공법의 특성으로 배면 토압에 의한 벽체의 밀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터파기 전, 버팀 보의 설치도 가능하다. 또한 버팀 보의 중앙과 양단의 연결부가 접이식 Hinge로 되어있어 버팀 보 해체 또한 용이한 기술이다

<범위>

지중에 관로 및 구조물의 설치를 위해 지반 굴착 후 작업 공간에 외부의 토사 및 지하수의 유입을 방지 및 지연하기 위한 기초 공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정 중 하나로서, 양단에 암부와 수부가 있는 체결형 패널(열연강판)과 접이식 버팀 보로 구성된 단위체의 가시설 흠막이 공법으로 기존의 띠장 설치 및 현장 가공 등을 배제한 공법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 ●국토교통부공고제2019-560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리플래시기술(주)(이홍원) ② (주)케이에스씨건설(정희공)  
③ (주)이산(이원찬) ④ 이상철

나. 전화번호 : ① 02-480-3807 ② 031-217-3903 ③ 031-389-0069 ④ 010-3364-6534

2. 명칭 : 건·습식 하이브리드 뿔칠장비로 시공한 수복용 모르타르 위에 유·무기 복합 표면보호재로 도포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공법

## 3. 내용요약

&lt;분야&gt;

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 제외) / 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lt;기술의 요지&gt;

신청기술은 열화된 콘크리트를 제거한 보수 단면에 건식 분체이송장비와 습식 분사장비를 결합한 건·습식 하이브리드 뿔칠장비를 사용하여 수복용 모르타르를 타설하고, 그 위에 표면보호와 모체와의 결합력이 향상된 유·무기 합성 복합 표면보호재로 도포한 노후 구조물 보수공법

&lt;범위&gt;

건식 분체이송장비와 습식 분사장비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뿔칠시공 장비를 사용하여 수복용 모르타르를 타설한 후 복구 단면 표면에 유·무기 복합코트를 도포하여 시공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법

##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 ●국토교통부공고제2019-617호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lt;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gt;

## 1. 개정이유

해외건설촉진법은 해외건설업자로 하여금 '수주활동 및 시공 상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시행령에서 정한 여러 가지 상황별 보고 항목들을 간소화함으로써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해외건설업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해외건설촉진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공사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위하여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해외사업 발주 정보 등 구체적인 정보 항목을 시행령으로 정하고 해외주재관 등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민간위원의 비중을 늘리고 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해외건설 분야별로 전문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